

전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나7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H

변론 종결 2018. 8. 16.

판결 선고 2018. 9. 6.

제 1 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7. 27. 선고 2015가단11480 판결

주 문

1.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의 피고 C, D, H에 대한 항소를 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C, D,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C은 같은 목록 연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제37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는 같은 목록 연번 12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8. 2. 접수 제6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원고 B에게, 피고 H는 같은 목록 연번 16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 C은 같은 목록 연번 19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7. 접수 제3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A의 조카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들의 소유였으나(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의,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접수일자 · 접수번호'란 기재의 일시에 같은 목록 '현 소유자'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A은 피고 C, D, E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내지 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은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2009다105215 판결 참조).

다. 판단

- 1) 갑 제10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A이 2014. 11. 28.경 넘어져서 후두부를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4. 12. 1.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후 원고 A이 2015. 2. 말경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2015.3. 8.부터 2015. 4. 10.경까지 J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과정에서 음식물 공급을 위한 삽관 시술까지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 2)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과 위 피고들 사이의 2015. 4.1. 및 같은 해 8. 12.자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당시 원고 A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 A이 피고 C, D, E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2015. 4. 1. 당시 원고 A은 전신쇠약, 기침, 가래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 A이 증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치매 등의 증세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온전치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②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2015. 4. 1. 무렵 주치의 등에게 직접 자신의 증상과 불편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③ 원고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2015. 7.경부터는 의식 및 기억력을 회복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 A은 그 이후인 2015. 8. 12. 피고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 ④ 한편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K이 그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원고 A과 법무사 K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친구 사이로서, 위 등기업무를 위임받을 당시 K이 직접 원고 A의 소유권이전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면에 무인까지 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B의 피고 C, D, H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B은 피고 C, D, H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6 내지 1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원고 B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A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이 원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부존재한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위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원고 B와 위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A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 D,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의 피고 C, D, H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김진성, 판사 박미영